

## ▣ 일시/장소

- 2019년 3월 26일(화) 오전 10시
-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, SK T-타워 4층 SUPEX홀 (우편번호: 04539)

## ▣ 의안

### 1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(2018 회계연도)

- 연결기준 매출액 16.9조원 (YoY -3.7%)
-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3.1조원 (YoY +17.9%)
- 주당 배당금 10,000원\* (현금배당성향 77%)  
\* 중간배당 주당 1,000원 포함

###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-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이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정관의 일부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.
- 정관의 한글화를 통해 주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(미등기임원)

- 4명 총 5,477주

###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(등기이사)

- 1명 총 1,734주

### 5 사외이사 선임의 건

- 김석동 후보

### 6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- 김석동 후보

### 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- 120억원 (총 이사의 수 8명)

## 제2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1)

### ■ 정관 개정

- 증권발행부터 소멸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화 하도록 규정한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이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정관의 일부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.
- 정관의 한글화를 통해 주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.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<b>第7條(株式 및 株券의 種類)</b>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種類는 記名式 普通株式과 記名式 優先株式으로 하고, 株券의 種類는 壹株券, 五株券, 壹拾株券, 五拾株券, 壹百株券, 五百株券, 壹仟株券, 壹萬株券의 8種으로 한다. (1989. 8. 14 本條改正)</p>	<p><b>제7조(주식의 종류)</b>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. (1989. 8. 14, 2019. 3. 28 본 조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주권에 관한 내용 삭제</li> <li>- 한글화</li> </ul>
<p><b>第9條(株券 不所持)</b> 株主의 請求가 있을 경우에는 그 所有하는 株式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株券을 發行하지 아니한다.</p>	<p><b>제9조(주권불소지) &lt;2019. 3. 28 삭제&gt;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등록에 따라 주권불소지 제도 폐지</li> <li>- 한글화</li> </ul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9조의2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</b>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(2019. 3. 28 본 조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식, 신주인수권증서의 전자등록에 관한 근거 신설</li> <li>- 한글화</li> </ul>
<p><b>第12條(名義改書 代理人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會社는 株式의 名義改書代理人을 둔다. (1989. 8. 14 本項改正)                      ② 名義改書代理人 및 그 業務取扱場所와 代行業務의 範圍는 理事會의 議決로 定하고 이를 公告한다. (1989. 8. 14 本項改正)</p>	<p><b>제12 조(명의개서 대리인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인을 둔다. (1989. 8. 14 본 항 개정)                    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업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 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 (1989. 8. 14 본 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글화</li> </ul>
<p>③ 會社는 會社의 株主名簿 또는 그 複本을 名義改書代理人의 事務取扱場所에 備置하고 株式의 名義改書, 質權의 登錄 또는 抹消, 株券의 發行, 申告의 接受, 其他 株式에 관한 事務를 名義改書代理人으로 하여금 代行業 한다. (1989. 8. 14 本項改正)                      ④ 第3項의 事務取扱에 關한 節次는 名義改書代理人에 關한  관련 규정에 따른다. (2012. 3. 23 本項改正)</p>	<p>③ 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. (1989. 8. 14, 2019. 3. 28 본 항 개정)                    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. (2012. 3. 23 본 항 개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명의개서는 전자등록으로 편입되고 주권의 질권제도는 질권 전자등록으로 전환</li> <li>- 한글화</li> </ul>

## 제2호 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2)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<b>第13條(株主등의住所, 姓名 및 印鑑申告 또는 署名申告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株主와 登錄質權者는 그 姓名, 住所 및 印鑑 또는 署名을 第12條의 名義改書代理人게 申告하여야 한다.(1996. 3. 15 本項 改正)                      ②外國에 居住하는 株主와 登錄質權者는 大韓民國內에 通知를 받을 場所와 代理人을 定하여 申告하여야 한다.(1989. 8. 14 本項 改正)                      ③第1項 및 第2項의 事項에 變動이 生기  경우에도  같다. (1989. 8. 14 本項 改正)                      ④前 各項의 登錄을 懈怠함으로 인하여 生기 損害에 對하여는 會社는 責任을  지지  아니한다.</p>	<p><b>제13조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신고 또는 서명신고) &lt;2019. 3. 28 삭제&gt;</b></p>	<p>- 전자등록 시행에 따라 주주 등의 제반정보 신고 불필요                      - 한글화</p>
<p><b>第17條(社債發行에 관한 準用規定)</b>                      第12條, 第13條의 規定은 社債發行의  경우에  준용한다. (1996. 3. 15 本條 改正)</p>	<p><b>제17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</b>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(1996. 3. 15, 2019. 3. 28 본 조 개정)</p>	<p>- 제13조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                     - 한글화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7조의3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</b>                     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(2019. 3. 28 본 조 신설)</p>	<p>-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근거 신설                      - 한글화</p>
	<p><b>부 칙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, 제9조, 제12조, 제13조, 제17조 및 제17조의3 에서 한글화를 제외한 개정 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는 날 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전자증권법 시행일에 따른 부칙 경과규정</p>

■ 정관의 한자를 모두 한글로 변경함

## 제3호 의안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(미등기임원)

### ■ 승인 요청사유

- 이사회에서 결의한 핵심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에 대해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고자 함.

### ■ 의결내용

- 부여대상자명: 하성호, 하형일, 박진호, 윤풍영
- 부여주식종류 및 수: 기명 보통주식 총 5,477 주
- 부여일 및 부여방법: 2019년 2월 22일, 자기주식 교부, 차액보상
- 기준 행사가격: 265,260원\*

\*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,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 가격

부여 대상자		부여 주식수	행사기간
하성호	CR센터장	1,369	2021. 2. 23 ~ 2024. 2. 22
하형일	CD센터장	1,564	
박진호	ICT기술센터장	1,300	
윤풍영	Corporate센터장	1,244	

## 제4호 의안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(등기이사)

### ■ 제안사유

-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 일치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회사의 장기적/궁극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.

### ■ 의결내용

- 부여대상자명: 유영상
- 부여주식종류 및 수: 기명 보통주식 총 1,734 주
- 부여일 및 부여방법: 2019년 3월 26일, 자기주식 교부, 차액보상
- 기준 행사가격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 2개월,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정 예정

부여 대상자		부여 주식수	행사기간
유영상	MNO사업부장	1,734	2021. 3. 27 ~ 2024. 3. 26

### ■ [참고] 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실효 내역 (등기이사 및 미등기임원)

부여일		부여 주식수	실효 주식수	잔여 주식수
2017년	3월 24일	66,504	0	66,504
2018년	2월 22일	5,707	4,349	1,358
2019년	2월 22일	5,477	0	5,477
계		77,688	4,349	73,339

## 제5호 의안. 사외이사 선임의 건



### 김석동 후보

- 생년월일: 1953. 5. 3
- 학력사항
  -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(1978)

### ■ 경력사항

-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(2015~현재)
- 금융위원회 위원장 (2011~2013)
- 제8대 재정경제부 제1차관 (2007~2008)
-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(2006~2007)
-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(1980)

### ■ 후보 추천 사유

- SKT는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경영, 경제, 회계,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 권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.
- 김석동 후보자는 오랜 기간 금융 관련 분야의 행정관료로 봉직해 온 자로서, 오랜 재무적 경력과 식견을 보유함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고 있어 당사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.

### ■ 최대 주주와의 관계: 없음

### ■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: 없음

## 제6호 의안.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

### 김석동 후보

- 생년월일: 1953. 5. 3
- 학력사항
  -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(1978)

### ■ 경력사항

-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(2015~현재)
- 금융위원회 위원장 (2011~2013)
- 제8대 재정경제부 제1차관 (2007~2008)
-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(2006~2007)
-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(1980)

### ■ 후보 추천 사유

- 김석동 후보자는 오랜 기간 금융 관련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재무적 경력과 식견을 보유함은 물론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함.
- 이에, SK텔레콤 이사회는 김석동 후보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 당사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함.

### ■ 최대 주주와의 관계: 없음

### ■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: 없음